

##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사항 없음
- 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사항 없음
- 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| 보고서코드 | 회사코드   | 공모추가형<br>펀드수 | 소규모<br>펀드수 | 부실자산<br>펀드수 | 증투법_개인연금<br>펀드수 | 소규모펀드<br>비율 | 제출기준일    | 오류내역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GSMC  | A01018 | 97           | 18         | 14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4.82        | 20170228 |      |

**\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